

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
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아이수루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본 조례 제정 이유를 살펴보면,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 및 교육 지원을 위한 명확한 국제교류협력 대상의 선정 및 검토, 사후관리 및 경비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□ 이에 안 제2조의 경우, 국제교류협력의 정의를 확대하고자 하며, 안 제6조의 경우, 국제교류협력사업의 교육감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. 또한, 안 제6조의2의 경우, 국제교류협력 대상 검토 및 선정을 규정하고자 합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